

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(제1차 교육위원회) 2018. 1. 19. 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광주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양희 의원 등 6인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18년 1월 9일

O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2일

#### 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(강당) 및 운동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장기 사용시 사용료를 인하하고, 징수액 편차를 해소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내용

-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에 관한 별표의 금액 중 일부 인하 (안 제22조제2항)
- O 장기사용 시 재산 관리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별표에 정한 사용 료 징수로 명시(안 제22조제5항)
- 사용료 감면조항 삭제(안 제22조제6항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(강당) 및 운동장의 1개월 이상 장기사용료를 50% 인하하고,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징수하는 것을 통일하여 학교별 징수액 편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지역주민들의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,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